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47,238,681	55,417,160
일반회계	1,649,165,240	49,474,957
특별회계	198,073,441	5,942,203
공기업특별회계	133,331,110	3,999,9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314,595	2,289,4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016,515	1,710,495
기타특별회계	64,742,331	1,942,27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715,628	81,4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44,339	148,33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312,770	669,383
주택사업특별회계	39,730	1,1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82,620	77,479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7,914,258	537,428
주차장특별회계	11,232,986	336,990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3,000,000	9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327,61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